

2024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추후 발표되는 모집시기별 모집요강 등을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I. 전형일정	1
II. 모집인원	2
1. 모집인원	2
2. 전형별 모집인원	2
3.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3
III. 수시모집	5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5
2. 학생부교과(일반학생 전형)	5
3. 학생부교과(대학독자 전형)	6
4. 학생부교과(기회균형 전형)	8
5. 학생부교과(다자녀가정 전형)	9
6.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전형)	10
7. 학생부교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형)	11
IV. 정시모집(“가”군)	13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13
2. 수능위주(일반학생 전형)	13
3. 수능위주(다자녀가정 전형)	14
4. 수능위주(농어촌학생 전형)	15
5. 수능위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형)	16
V. 전형방법	18
1. 선발기준 및 방법	18
2. 전형별 성적반영 방법 및 비율	18
3.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19
4.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23

I 전형일정

구 분		일 자
수능시험		2023. 11. 16(목)
수능성적통지		2023. 12. 08(금)
수시 모집	학생부 작성 기준일	2023. 08. 31(목)
	원서접수	2023. 09. 11(월) ~ 09. 15(금) 중 3일 이상
	전형기간	2023. 09. 16(토) ~ 12. 14(목)(90일)
	합격자 발표	2023. 12. 15(금) 까지
	합격자 등록	2023. 12. 18.(월) ~ 12. 21(목)(4일)
	미등록충원 합격 통보	2023. 12. 28(목) 18:00 까지
	미등록충원 등록 마감	2023. 12. 29(금)
정시 모집 (“가”군)	학생부 작성 기준일	2023. 11. 30(목)
	원서접수	2024. 01. 03(수) ~ 01. 06(토) 3일 이상
	전형기간	2024. 01. 09(화) ~ 01. 16(화)(8일)
	합격자 발표	2024. 02. 06(화)까지
	합격자 등록	2024. 02. 07(수) ~ 02. 13(화)(7일)
	미등록충원 합격 통보	2024. 02. 20(화) 18:00 까지
	미등록충원 등록 마감	2024. 02. 21(수)

※ 전형일정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름

II

모집인원

1 모집인원

■ **모집인원** : 426명 [정원 내 모집 370명, 정원 외 모집 56명]

- 수시모집 : 정원 내 모집 306명, 82.7% (정원 내·외 모집 포함 : 362명, 85.0%)
- 정시모집 : 정원 내 모집 64명, 17.3% (정원 내·외 모집 포함 : 64명, 15.0%)

2 전형별 모집인원

모집시기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비고
수시 모집	학생부교과	일반학생	268	정원내
	학생부교과	대학독자	14	정원내
	학생부교과	기회균형	24	정원내
	학생부교과	다자녀가정	37	정원외
	학생부교과	농어촌학생	7	정원외
	학생부교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2	정원외
	소 계			362
정시 모집 (“가”군)	수능위주	일반학생	64	정원내
	수능위주	다자녀가정	수시모집 이월인원	정원외
	수능위주	농어촌학생	수시모집 이월인원	정원외
	수능위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시모집 이월인원	정원외
	소 계			64
합 계			426	

3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가. 수시모집

계열	모 집 단 위	전 공	입학 정원	정원내 모집				정원의 모집		
				일반 전형	특별전형		계	특별전형		
				일반 학생	대학 독자	기회 균형		다자녀 가정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 / 차상위
인문사회	경찰학부	경찰행정학전공 경호학전공	40	29	0	3	32	4	모 집 단위별 입 학 정원의 10% 이 내	모 집 단위별 입 학 정원의 20% 이 내
인문사회	복지상담학부	상담복지학전공 언어치료학전공 아동학전공	50	34	3	3	40	5		
인문사회	융합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학전공 항공경영학전공 창업경영학전공	50	35	2	3	40	5		
공학	안전공학부	소방방재학전공 정보보안공학전공	40	26	3	3	32	4		
공학	건설공학부	건축학전공 토목공학전공	40	26	3	3	32	4		
공학	건설공학부(야)	건축학전공(야)	10	7	0	1	8	1		
공학	에너지기계공학부	전기공학전공 기계자동차공학전공	40	26	3	3	32	4		
예체능	체육학부	레저스포츠학전공 스포츠재활학전공 공연예술학전공	80	68	0	4	72	8		
예체능	체육학부(야)	레저스포츠학전공(야) 스포츠재활학전공(야)	20	17	0	1	18	2		
합 계			370	268	14	24	306	37		

※ 2024학년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학생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시모집 미 응원 인원은 정시모집("가"군)으로 이월하여 선발함 (추후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 예정)

나. 정시모집(“가”군)

계열	모집단위	전공	입학 정원	정원내 모집		정원의 모집	
				일반전형		특별전형	
				일반학생	다자녀 가정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 / 차상위
인문사회	경찰학부	경찰행정학전공 경호학전공	40	8	수시모집 이월인원	수시모집 이월인원	수시모집 이월인원
인문사회	복지상담학부	상담복지학전공 언어치료학전공 아동학전공	50	10	수시모집 이월인원		
인문사회	융합경영학부	호텔관광경영학전공 항공경영학전공 창업경영학전공	50	10	수시모집 이월인원		
공학	안전공학부	소방방재학전공 정보보안공학전공	40	8	수시모집 이월인원		
공학	건설공학부	건축학전공 토목공학전공	40	8	수시모집 이월인원		
공학	건설공학부(야)	건축학전공(야)	10	2	수시모집 이월인원		
공학	에너지기계공학부	전기공학전공 기계자동차공학전공	40	8	수시모집 이월인원		
예체능	체육학부	레저스포츠학전공 스포츠재활학전공 공연예술학전공	80	8	수시모집 이월인원		
예체능	체육학부(야)	레저스포츠학전공(야) 스포츠재활학전공(야)	20	2	수시모집 이월인원		
합 계			370	64	수시모집 이월인원		

※ 2024학년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은 학생정원 조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수시모집 미 충원 인원은 정시모집(“가”군)으로 이월하여 선발함(추후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공지 예정)

III 수시모집

1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전형유형	전형명	실질 반영 비율		최고점/최저점			비고
		학생부		반영 요소	최고점	최저점	
		교과	비교과				
학생부교과	일반학생	90%	출석 10%	학생부	교과	900	738
					비교과(출석)	100	82
학생부교과	대학독자	90%	출석 10%	학생부	교과	900	738
					비교과(출석)	100	82
학생부교과	기회균형	90%	출석 10%	학생부	교과	900	738
					비교과(출석)	100	82
학생부교과	다자녀가정	90%	출석 10%	학생부	교과	900	738
					비교과(출석)	100	82
학생부교과	농어촌학생	90%	출석 10%	학생부	교과	900	738
					비교과(출석)	100	82
학생부교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90%	출석 10%	학생부	교과	900	738
					비교과(출석)	100	82

2 학생부교과(일반학생 전형)

가.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전형요소별 배점

선발방법	총점	전형요소별 배점
일괄합산	1,000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1,000점

다. 수능 반영영역 및 최저학력기준 : 미적용

라. 제출서류

대 상 자	제 출 서 류
지원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 1부 <대학 소정양식> ○ 고등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 성적 온라인제공 동의자 미 제출 ○ 검정고시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

3 학생부교과(대학독자 전형)

가.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아래 ① ~ ⑪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 추천자
 - 품행이 단정하고 지원 학과의 적성과 소질이 부합되는 자
- ②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 또는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취득자
- ③ 특성화 고교 출신자
 - 일반계 고교 및 종합계 고교 등에서 특성화 학과 출신자도 인정
- ④ 학생임원 활동 역임자
 - 고등학교 재학 중 총학생회 임원(부장 이상), 학급 반장을 1개 학기 이상 역임한자
- ⑤ 검정고시 합격자
- ⑥ 산업체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 ⑦ 대학(교) 1년 과정 이상 이수자
- ⑧ 영농·어업 종사자 또는 그 자녀
- ⑨ 해녀 또는 그의 자녀
- ⑩ 4·3사건 유가족
- ⑪ 직업군인 자녀

나. 전형요소별 배점

선발방법	총 점	전형요소별 배점	비 고
일괄합산	1,000점	학생부 1,000점	

다. 수능 반영영역 및 최저학력기준 : 미적용

라. 제출서류

대 상 자	제 출 서 류
○ 지원자 전원	○ 입학원서 1부 <대학 소정양식> ○ 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 학생부성적온라인제공 동의자 미 제출 ○ 검정고시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
①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 추천자	○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 추천서 1부
②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확인 증명서(해당기관 발행) 1부
③ 특성화 고교 출신자	○ 출신학과가 기재된 학교생활기록부 1부
④ 학생임원 활동 역임자	○ 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임원활동역임서 1부
⑤ 검정고시 출신자	○ 합격증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⑥ 산업체 근무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⑦ 대학(교) 1년 과정 이상 이수자	○ 재학(수료) 증명서 또는 성적 증명서 1부
⑧ 영농·어업 종사자 또는 그의 자녀	○ 영농·어업 종사자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⑨ 해녀 또는 그 자녀	○ 해녀 조업 증명서 1부
⑩ 43사건 유가족	○ 제주 43사건 유족결정 확인서 1부
⑪ 직업군인 자녀	○ 복무확인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학생부교과(기회균형 전형)

가.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아래 ① ~ 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및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만학도

- 만 30세 이상인 자 (2024년 3월 1일 기준)

③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④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이나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나. 전형요소별 배점

선발방법	총 점	전형요소별 배점	비 고
일괄합산	1,000점	학생부 1,000점	

다. 수능 반영영역 및 최저학력기준 : 미적용

라. 제출서류

대상자	제 출 서 류	발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 1부<대학 소정양식> ◦ 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성적온라인제공 동의자 미 제출 ◦ 검정고시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 	

대상자		제 출 서 류	발급기관
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지원자 전원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원서접수 시작일 30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시
	◦ 기초생활수급권자	◦ 기초수급권자 증명서(본인 명의) 1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1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연금부가급여대상자	◦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 1부	
	- 자활급여대상자	◦ 자활근로자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1부	
- 차상위계층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한부모가정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② 만학도		◦ 주민등록등본	
③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보훈(지)청장
④ 북한이탈주민		◦ 학력인정증명서	거주 지역 시도교육청
		◦ 학력확인서	거주 지역 시·군·구청 발급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발급

5 학생부교과(다자녀가정 전형)

가.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형제 및 자매가 2인 이상) 구성원으로 부모 및 다자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나. 전형요소별 배점

선발방법	총 점	전형요소별 배점	비 고
일괄합산	1,000점	학생부 1,000점	

다. 수능 반영영역 및 최저학력기준 : 미적용

라. 제출서류

대 상 자	제 출 서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 1부 <대학 소정양식> ○ 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성적온라인제공 동의자 미 제출 ○ 검정고시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접수 시작일 30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6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전형)

가.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다음 아래 ① ~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및 대학 입학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하며, 고교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지역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 중·고교 6년간 농어촌지역에서 교육과정 이수자(본인, 부모 거주자) 중 부모가 사망, 이혼 또는 실종한 경우
-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 실종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망일 또는 실종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만을 기준으로 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률상의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 부 또는 모와 읍·면 지역에 거주해야 함
 - 입양한 양자의 경우 법

②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지역 소재지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 까지 연속적으로 이수한 자(본인과 부모의 거주기간은 적용하지 않음)

나. 전형요소별 배점

선발방법	총 점	전형요소별 배점	비 고
일괄합산	1,000점	학생부 1,000점	

다. 수능 반영영역 및 최저학력기준 : 미적용

라. 제출서류

대 상 자	제 출 서 류
○ 지원자격 ①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 1부 <대학 소정양식> ○ 농·어촌 특별전형 추천서 1부 ○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각 1부 ○ 부, 모, 지원자 모두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주소지 이동 사항이 모두 명기된 것 ※ 원서접수 시작일 30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지원자격 ②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 1부 <대학 소정양식> ○ 농·어촌 특별전형 추천서 1부 ○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각 1부 ○ 지원자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지 이동 사항이 모두 명기된 것 ※ 원서접수 시작일 30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부모의 이혼, 사망,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지원자격 소명이 필요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증빙 서류 각 1부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 이력 포함) 등 ※ 원서접수 시작일 30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7 학생부교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형)

가.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전형요소별 배점

선발방법	총 점	전형요소별 배점	비 고
일괄합산	1,000점	학생부 1,000점	

다. 수능 반영영역 및 최저학력기준 : 미적용

라. 제출서류

대상자	제 출 서 류	발급기관
◦ 지원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 1부<대학 소정양식> ◦ 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성적온라인제공 동의자 미 제출 ◦ 검정고시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원서접수 시작일 30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시
◦ 기초생활수급권자	◦ 기초수급권자 증명서(본인 명의) 1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1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연금부가급여대상자	◦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 1부	
- 자활급여대상자	◦ 자활근로자확인서 1부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차상위계층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한부모가정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IV 정시모집(“가”군)

1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및 배점

전형 유형	전형명	실질 반영 비율			최고점/최저점				비고
		학생부		수능	반영 요소		최고점	최저점	
		교과	비교과						
수능 위주	일반학생	13%	출석 1%	86%	학생부	교과	405	324	
					학생부	비교과(출석)	45	36	
					수능	수능	550	0	
수능 위주	다자녀가정	13%	출석 1%	86%	학생부	교과	405	324	
					학생부	비교과(출석)	45	36	
					수능	수능	550	0	
수능 위주	농어촌학생	13%	출석 1%	86%	학생부	교과	405	324	
					학생부	비교과(출석)	45	36	
					수능	수능	550	0	
수능 위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3%	출석 1%	86%	학생부	교과	405	324	
					학생부	비교과(출석)	45	36	
					수능	수능	550	0	

2 수능위주(일반학생 전형)

가.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전형요소별 배점

선발방법	총 점	전형요소별 배점	비고
일괄합산	1,000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550점 + 학생부 450점	

다. 수능 반영영역 및 최저학력기준

- 수능 반영영역 : 국어 30%, 수학 30%, 영어 30%, 탐구영역(사회,과학,직업) 10%
 - 한국사 성적(등급)별 가산점 부여
- 최저학력기준 : 미적용

라. 제출서류

대 상 자	제 출 서 류
○ 지원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 1부 <대학 소정양식> ○ 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성적 온라인제공 동의자 미 제출 ○ 검정고시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

3 수능위주(다자녀가정 전형)

가.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구성원(형제 및 자매가 2인 이상)으로 부모 및 다자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나. 전형요소별 배점

선발방법	총 점	전형요소별 배점	비 고
일괄합산	1,000점	수능 550점 + 학생부 450점	

다. 수능 반영영역 및 최저학력기준

- 수능 반영영역 : 국어 30%, 수학 30%, 영어 30%, 탐구영역(사회,과학,직업) 10%
 - 한국사 성적(등급)별 가산점 부여
- 최저학력기준 : 미적용

라. 제출서류

대 상 자	제 출 서 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 1부 <대학 소정양식> ○ 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성적 온라인제공 동의자 미 제출 ○ 검정고시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원서접수 시작일 30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4 수능위주(농어촌학생 전형)

가.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다음 아래 ① ~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읍·면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출신자 및 대학 입학 검정고시 합격자는 제외하며, 고교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지역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 본인과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 중·고교 6년간 농어촌지역에서 교육과정 이수자(본인, 부모 거주자) 중 부모가 사망, 이혼 또는 실종한 경우
 -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 실종된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망일 또는 실종일 이후부터 생존하는 부 또는 모만을 기준으로 함
 -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률상의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 부 또는 모와 읍·면 지역에 거주해야 함
 - 입양한 양자의 경우 법
- ②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광역시·도, 도·농 통합시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 포함) 지역 소재지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 까지 연속적으로 이수한 자(본인과 부모의 거주기간은 적용하지 않음)

나. 전형요소별 배점

선발방법	총 점	전형요소별 배점	비 고
일괄합산	1,000점	수능 550점 + 학생부 450점	

다. 수능 반영영역 및 최저학력기준

- 수능 반영영역 : 국어 30%, 수학 30%, 영어 30%, 탐구영역(사회,과학,직업) 10%
 - 한국사 성적(등급)별 가산점 부여
- 최저학력기준 : 미적용

라. 제출서류

대 상 자	제 출 서 류
○ 지원자격 ①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 1부 <대학 소정양식> ○ 농·어촌 특별전형 추천서 1부 ○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각 1부 ○ 부, 모, 지원자 모두의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주소지 이동 사항이 모두 명기된 것 ※ 원서접수 시작일 30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지원자격 ②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 1부 <대학 소정양식> ○ 농·어촌 특별전형 추천서 1부 ○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각 1부 ○ 지원자 주민등록초본 1부 ※ 주소지 이동 사항이 모두 명기된 것 ※ 원서접수 시작일 30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부모의 이혼, 사망,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지원자격 소명이 필요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증빙 서류 각 1부 ※ 원서접수 시작일 30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주소변경 이력 포함) 등

5 수능위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전형)

가.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나. 전형요소별 배점

선발방법	총 점	전형요소별 배점	비 고
일괄합산	1,000점	수능 550점 + 학생부 450점	

다. 수능 반영영역 및 최저학력기준

- 수능 반영영역 : 국어 30%, 수학 30%, 영어 30%, 탐구영역(사회,과학,직업) 10%
 - 한국사 성적(등급)별 가산점 부여
- 최저학력기준 : 미적용

라. 제출서류

대상자	제 출 서 류	발급기관
○ 지원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학원서 1부<대학 소정양식> ◦ 고등학교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부성적온라인제공 동의자 미 제출 ◦ 검정고시출신자 : 검정고시 합격 및 성적증명서 사본 1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시
○ 기초생활수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기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원서접수 시작일 30일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차상위계층		
- 장애수당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1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장애연금부가급여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 1부 	
- 자활급여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자확인서 1부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차상위계층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한부모가정지원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V 전형 방법

1 선발기준 및 방법

- 가.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별로 총점 성적 순위에 따라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함
- 나. 예비 후보자는 모집단위별로 합격자를 제외한 차순위 부터 성적순에 따라 지원자 모두(불합격자 제외)를 선발하며 충원 합격자 발표기간에 합격자를 선발함
- 다. 장애 학생 지원자도 일반학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학 전형에 불이익이나 차별 없이 선발함
- 라. 동점자 선발 기준

수시모집	정시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3학년 학생부 전체 성적 상위자 ○ 2순위 : 2학년 학생부 전체 성적 상위자 ○ 3순위 : 1학년 학생부 전체 성적 상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상위자 ○ 2순위 : 3학년 학생부 전체 성적 상위자 ○ 3순위 : 2학년 학생부 전체 성적 상위자

2 전형별 성적반영 방법 및 비율

모집시기	전형유형	전형명	사정단계	전형요소별 반영점수(실질반영비율)			
				수학능력	학생부(교과)	학생부(출석)	합계
수시모집	학생부교과	일반학생	일괄	-	900점 (90%)	100점 (10%)	1,000점 (100%)
		대학독자	일괄	-	900점 (90%)	100점 (10%)	1,000점 (100%)
		기회균형	일괄	-	900점 (90%)	100점 (10%)	1,000점 (100%)
		다자녀가정	일괄	-	900점 (90%)	100점 (10%)	1,000점 (100%)
		농어촌학생	일괄	-	900점 (90%)	100점 (10%)	1,000점 (10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괄	-	900점 (90%)	100점 (10%)	1,000점 (100%)
정시모집 ("가"군)	수능위주	일반학생	일괄	550점 (86%)	405점 (13%)	45점 (1%)	1,000점 (100%)
		다자녀가정	일괄	550점 (86%)	405점 (13%)	45점 (1%)	1,000점 (100%)
		농어촌학생	일괄	550점 (86%)	405점 (13%)	45점 (1%)	1,000점 (10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괄	550점 (86%)	405점 (13%)	45점 (1%)	1,000점 (100%)

3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방법

가. 반영비율

전형명	모집단위	학년별 교과성적 반영비율			요소별 반영비율	
		1학년	2학년	3학년	교과성적	출석성적
모든 전형	전체 학과	20%	40%	40%	90%	10%

나. 반영교과 및 점수산출 활용지표

전형명	모집단위	반영교과목	점수산출 활용지표	비고
모든 전형	전체 학과	전 교과목	석차등급	

※ “이수”, “미이수”, “.” 등으로 석차등급 미 표기 교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다. 성적 반영방법

1) 2008년 2월 이후 졸업(예정)자

◦ 교과성적 산출방법

- 과목별 석차등급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준표의 과목별 반영점수를 산출함
- 산출된 과목별 반영점수에 과목별 이수단위를 곱하여 과목별 가중점수를 산출함
- 산출된 과목별 가중점수를 학기별로 합산하여 학기별 이수단위의 합으로 나누고 학년별 반영비율(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 1/2로 곱하여 학기별 교과점수를 산출함
- 산출된 학기별 교과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교과성적 총점을 산출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 석차등급(9등급제) 대신 성취평가제 평가방식(A, B, C, D, E)에 따라 표시된 교과목은 아래의 평정표에 의거 등급을 산출함

성 적	A	B	C	D	E
환산등급	2	3	5	7	9

- 예술/체육/진로교과 등 과목별 등급이 3등급(우수/보통/미흡 또는 A/B/C)으로 평가된 경우 아래의 평정표에 의거 등급을 산출함

성 적	우수 또는 A	보통 또는 B	미흡 또는 C
환산등급	2	5	8

◦ 출석성적 산출방법

- 학년별 미인정에 의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를 반영하며 지각, 조퇴, 결과는 이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함(소수점 이하 버림)

2) 1998년 2월 ~ 2007년 2월 졸업자

◦ 교과성적 산출방법

- 과목별 성적성취도(평어)에 따른 과목별 평어점수를 산출함
(평어 : 수 5점, 우 4점, 미 3점, 양 2점, 가 1점)
- 산출된 과목별 평어점수를 과목별 이수단위를 곱하여 과목별 가중점수를 산출함
- 산출된 과목별 가중점수를 학기별로 합산하고 학기별 이수단위의 합으로 나누어 학기별 평어환산평균을 산출함
- 산출된 학기별 평어환산점수를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준표에 대입하여 학기별 반영점수를 산출함
- 산출된 학기별 반영점수를 학년별 반영비율 1/2로 곱하여 학기별 교과점수를 산출함
- 산출된 학기별 교과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교과성적 총점을 산출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 출석성적 산출방법

- 학년별 미인정에 의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를 반영하며 지각, 조퇴, 결과는 이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함(소수점 이하 버림)

3) 1997년 이전 졸업자

◦ 교과성적 산출방법

- 학기별 계열석차 백분율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준표에 대입하여 학기별 반영점수를 산출함
- 산출된 학기별 반영 점수를 학년별 반영비율 1/2로 곱하여 학기별 교과점수를 산출함
- 산출된 학기별 교과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교과성적 총점을 산출함(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

- 종전생활기록부로 계열석차(학년석차) 확인이 불가능한 자는 최저등급(점수) 부여

◦ 출석성적 산출방법

- 학년별 미인정에 의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를 반영하며 지각, 조퇴, 결과는 이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함(소수점 이하 버림)

4) 검정고시 출신자

◦ 교과목 반영방법

- 검정고시 성적 증명서의 취득평균점수를 학생부 성적 기준으로 환산 적용

◦ 교과성적 산출방법

- 백분율 : $(100 - \text{취득평균점수}) \times 2.5$
- 석차 등급 : 상기 백분율을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기준표에 의거 환산

◦ 출석성적 산출방법

- 검정고시 성적에서 취득한 석차 등급을 출석성적 등급에 동일하게 적용

5) 외국 교육과정 일부 이수자 등 일부 학기의 성적이 없는 경우

구분	1학년 성적 없음	2학년 성적 없음	3학년 성적 없음	2개 학년 성적 없음
반영비율	2학년 50% 3학년 50%	1학년 40% 3학년 60%	1학년 40% 2학년 60%	1개학년 100%

※ 최소 2개 학기 이상의 성적이 기재돼 있어야 하며, 한 학기만 성적이 기록되어 있는 학년의 성적은 그 한 학기의 성적을 당해 학년 성적으로 산출함

6)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교과교육 소년원 고교과정 이수자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및 출석 성적 기준표의 9등급 및 석차 백분율 98.5% 반영

라. 학생부 온라인 제공

1) 대 상 : 2016년 2월 졸업자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온라인제공 시스템 설치교

- 특수학교, 방송통신교, 각종학교 및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교 등은 제공가능 학교만 해당

2) 2016년 2월 이전 졸업자 또는 학생부 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하지 않거나, 온라인제공 대상 제외교 출신자는 반드시 학생부 사본 제출

마.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기준표

등급	석차백분율 (%)	평어환산평균 (1998~2007학년도)	반영점수		비고
			수시모집	정시모집	
1	0.00 - 4.00	4.84 - 5.00	900	405	
2	4.01 - 11.00	4.56 - 4.83	879.75	394.875	
3	11.01 - 23.00	4.08 - 4.55	859.5	384.75	
4	23.01 - 40.00	3.40 - 4.07	839.25	374.625	
5	40.01 - 60.00	2.60 - 3.39	819	364.5	
6	60.01 - 77.00	1.92 - 2.59	798.75	354.375	
7	77.01 - 89.00	1.44 - 1.91	778.5	344.25	
8	89.01 - 96.00	1.16 - 1.43	758.25	334.125	
9	96.01 - 100.00	1.00 - 1.15	738	324	

바. 학교생활기록부 출석성적 기준표

등급	결석일수		반영점수		비고
	2개 학년	3개 학년	수시모집	정시모집	
1	0 - 2	0 - 3	100	45	
2	3 - 5	4 - 7	97.75	43.875	
3	6 - 8	8 - 11	95.5	42.75	
4	9 - 11	12 - 15	93.25	41.625	
5	12 - 14	16 - 19	91	40.5	
6	15 - 17	20 - 23	88.75	39.375	
7	18 - 20	24 - 27	86.5	38.25	
8	21 - 23	28 - 31	84.25	37.125	
9	24일 이상	32일 이상	82	36	

4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가. 영역별 반영비율

모집단위	수능성적 활용지표	반영 영역수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100%)				비고
			국어	수학	영어	탐구영역 (사회,과학,직업)	
전체학과	백분위	4	30%	30%	30%	10%	

- ※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백분위, 영어 영역은 등급 성적을 백분위로 환산함
- ※ 탐구영역은 학생이 응시한 과목 중 백분위가 가장 높은 1개의 과목을 반영함
-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4학년도 성적을 반영함

나. 영어영역 등급별 성적 기준표

등급	백분위 환산 점수	등급	백분위 환산 점수
1	100	6	55
2	93	7	45
3	88	8	35
4	75	9	25
5	65		

다. 가산점 적용방법

수능영역	등급	1	2 ~ 3	4 ~ 5	6 ~ 7	8 ~ 9
한국사	가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제주국제대학교
Jeju International University

<http://www.jeju.ac.kr>

입학팀

6330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70(영평동)

TEL. 064) 754-0227~8 FAX. 064) 702-0268